

#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관서(협력기업용)

##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입점 Seller 간 체결한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관에 기초하여 \_\_\_\_\_ (이하 “본인” 또는 “협력기업”이라 합니다)은(는) 상위 기업에 대한 물품 등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용약관(이하 “이 약정”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은행의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상위 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거나 하위 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망 상생결제”라 함은 온라인마켓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입점 Seller(“입점 Seller”의 정의와 같습니다)와 입점 Seller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기업(“협력기업”의 정의와 같습니다)의 납품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온라인마켓,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가 협력하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전자방식의 공급망 금융을 말합니다.
- “온라인마켓”이라 함은 특정 공간(방송, 매체, 온라인 물, 백화점 등, 이하 “판매공간”이라 합니다)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입점 Seller 간의 물품 등의 거래를 중개(유사 형태를 포함합니다)하고 수취한 거래대금을 입점 Seller에게 지급하는 대금지급 채무의 채무자이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공급망 상생결제 업무협약(온라인마켓 用)’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 “입점 Seller”라 함은 온라인마켓이 제공하는 판매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거래대금을 결제 받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관(입점 Seller 用)’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 “협력기업”이라 함은 입점 Seller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 또는 그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은행과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관(협력기업 用)’을 체결한 기업을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말합니다.  
입점 Seller가 협력기업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는 입점 Seller를 ‘상위 기업’이라 하고, 협력기업을 ‘하위 기업’이라 하며, 여러 협력기업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물품 등을 납품받는 협력기업을 ‘상위 기업’이라 하고, 그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기업을 ‘하위 기업’이라 합니다.  
복수의 협력기업은 상위 기업에서 하위 기업의 순서로 N차 협력기업, N+1차 협력기업이라 합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재단”은 “온라인마켓” 또는 ‘상위 기업’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공급망 상생결제”에 따라 확정된 “입점 Seller”의 “외상매출채권” 대금 또는 “협력기업”의 “상생매출채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온라인마켓”으로부터 변제 받아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에게 지급하며, “재단”은 “재단”이 선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온라인마켓” 앞 구상권(이 협약에 따라 재단에 부여되는 약정상 권리로서, 법령 및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적 의미의 ‘구상권’을 의미하지 아니함; 이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구상권’ 또는 ‘구상채무’의 의미에 관하여 동일)을 가집니다.
- “에스크로계좌”라 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설한 재단 명의로 전용예치계좌로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결제를 위해 온라인마켓이 결제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대금 및 지연배상금, 선지급(아래에서 정의됨)에 사용될 금원 등을 예치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 “MP(Market Place)”라 함은 「상생결제 운영요령」에서 정한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로서,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이용기업 간 납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을 중계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 입점 Seller 및 협력기업은 온라인마켓 또는 상위 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및 발행 취소 신청 등 취소와 관련한 업무, 선지급 신청, 조회 등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마켓은 MP사이트에서 입점 Seller 앞 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발행 취소 신청 등 취소와 관련한 업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조회 등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적인 방식의 외상매출채권(이하 “외상매출채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온라인마켓이 제공하는 판매공간에서 입점 Seller가 온라인마켓의 이용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한 거래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온라인마켓이 입점 Seller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에 따른 채권을 말합니다.



9. “전자적인 방식의 상생매출채권(이하 “상생매출채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온라인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을 입점 Seller에게 납품하는 협력기업에게 납품거래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입점 Seller가 협력기업을 수취인으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당해 협력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에 따른 채권을 말합니다.
10. “선지급 신청”이라 함은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이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선지급”이라 함은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의 선지급 신청에 의해 재단이 재단 명의로 에스크로계좌에서 지급하여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점 Seller 또는 협력기업의 약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약정의 체결,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채권의 발행 및 채권 발행의 취소 신청 등 취소와 관련한 업무, 채권 대금의 선지급 신청 등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가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MP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제3조 (업무의 방법)

- ① 이 약정에 의한 거래는 하위 기업이 상위 기업에 대하여 상생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재단은 상위 기업이 부담하는 거래대금 지급채무를 아래와 같이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하며, 본인은 은행과 공급망 상생결제 이용약정을 체결한 때에 채권 대금의 선지급과 상생매출채권 발행에 따른 채무인수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입점 Seller가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입점 Seller가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금액에 대하여 입점 Seller가 협력기업에게 부담하는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점 Seller가 협력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또는 상위 기업이 하위 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상위 기업이 하위 기업에게 또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상위 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금액에 대하여 상위 기업이 하위 기업에게 부담하는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본인은 상위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채권 대금의 선지급을 신청하여 재단으로부터 채권 대금을 선지급 받거나,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 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의 지급 대행을 통하여 채권 대금을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④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권 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으나,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거나 선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채권 대금에 대하여는 재단 명의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

### 제4조 (수수료율)

- ① 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 재단이 정한 수수료율에 따른 ‘선지급 수수료’와 MP사업자가 정한 ‘MP이용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선지급 수수료율과 MP이용 수수료 금액은 선지급 신청시 MP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② 선지급 수수료는 채권 대금을 선지급하는 날로부터 채권의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제8조에서 정한 입금계좌에 입금 시 차감하고 입금합니다.

### 제5조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상생매출채권의 발행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

1. 협력기업은 허위 매출 및 현금용통성 거래가 아닌 물품 등의 거래대금 지급 용도로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기로 하며,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의 최장 만기일은 상생매출채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합니다.
2. 채권의 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채권의 만기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로 자동으로 이연하여 처리합니다.
4. 협력기업은 MP 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온라인마켓 및 동 채권을 근거로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기업을 하위 기업으로 하는 상생매출채권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제6조 (매출채권의 소멸)

본인이 상위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본인이 선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이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신청일에 재단이 재단 명의로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급하여 본인의 계좌에 선지급하는 때에 본인의 선지급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합니다.



## 2. 본인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인이 상위 기업으로부터 추기한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 기업에게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때에, 본인의 상생매출채권 발행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합니다.

### 제7조 (채권의 취소)

- 상위 기업은 하위 기업이 판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산 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 영업일까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MP에게 상생매출채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상위 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하위 기업이 일부라도 선지급 받거나,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하위 기업에게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위 기업은 상생매출채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물품 등의 거래대금 지급과 무관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상생매출채권 대금 입금계좌의 지정)

상생매출채권 대금을 결제 받기 위한 본인의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은행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 제9조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선지급 신청, 채권 대금의 선지급 및 만기 결제)

- 본인은 상위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에 채권 대금의 선지급을 신청하여 재단으로부터 채권 대금을 선지급 받거나, 은행의 지급 대행을 통하여 채권 대금을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 받지 않은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결제는 온라인마켓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만 결제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 선지급 신청은 상생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지급 신청은 상생매출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 은행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선입금 신청 시, 재단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서 지급하여 본인의 약정계좌에 대금 입금하므로, 선지급은 에스크로계좌의 선지급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상위 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협력기업이 선지급 신청한 일자가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이 재단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 제10조 (업무의 제한)

다음 각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허위 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기타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 온라인마켓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 제11조 (지급보류 등록)

이 약정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하 “압류 등”이라고 합니다)이 상위 기업에게 송달되는 경우, 상위 기업의 신청 등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 금액 전부에 대하여 선지급을 받거나 하위 기업 앞으로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협력기업의 매출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압류 등 대상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 금액의 일부라도 선지급을 받지도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생매출채권의 발행을 취소하고 상위 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 상생매출채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을 받거나 또는 하위 기업 앞 또 다른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상생매출채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상위 기업의 신청 등에 의해 상생매출채권의 잔여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류 등록을 하기로 합니다.
- 지급보류 등록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도래 시 결제 대금은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12조 (정보제공의 동의)

본인은 공급망 상생결제 제도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MP, 온라인마켓, 입점 Seller, 상위 기업 및 하위 기업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MP에게는 본인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채권 정보, 선지급 신청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2. 온라인마켓, 입점 Seller, 상위 기업 및 하위 기업에게는 본인에 관한 사업자정보, 상생매출채권 정보, 선지급 신청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제13조 (약정의 효력)

이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순서로 하며,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상생결제 운영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14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년 월 일

협력기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주소 : \_\_\_\_\_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